

**2019년도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**

2019년도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2월 22일

정신건강R&D사업단장 김철웅

< 국가정신건강 R&D 추진방향 >

국가정신건강R&D 사업은 국가차원의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'22년~'31년까지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**정신건강 증진, 중증정신질환, 4차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정신건강 등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투자**

2019년도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사업 전략목표

정신건강기술개발 분야에 중독(알코올)과 자살예방에 집중하며,
연구성과(코호트, 앱, 웹)의 유지·표준화·활용 등 확산연구 수행

중점과제 및 우선순위 영역

알코올 중독 및 자살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알코올중독 예방 및 치료, 만성화방지 ▪ 자해 예방 및 자살 선별·평가 도구, 프로그램 개발, 효과 검증 ▪ 사회적 고립 현황 및 발굴
정신질환 및 특수집단 코호트 구축 및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향적 코호트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/정신건강 예후요인 및 원인규명 ▪ 코호트 유지활용 전략수립
연구성과 검증 및 표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신건강 R&D 성과 검증 및 표준화 ▪ 현장 적용, 확산

I. 공고 개요

- 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“공모안내서의 II. 제안요청서(RFP)”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공고단위 (RFP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대상	과제구성 요건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
1. 알코올 중독 및 자살예방 기술개발	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	33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20백만원 이내)	3년 이내 (1차년도 8개월)	산·학·연·병	세부과제 2개 이상	1
	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고위험음주 조기개입기술 개발	33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220백만원 이내)	3년 이내 (1차년도 8개월)	산·학·연·병	세부과제 2개 이상	1
2. 정신질환 및 특수집단 코호트 구축 및 활용	정신질환/정신건강 코호트 관리체계 개발 및 일반인구 대상 정신질환 코호트 상세기획	3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50백만원 이내)	3년 이내 (1차년도 6개월)	산·학·연·병	세부과제 2개 이상	1

II. 신청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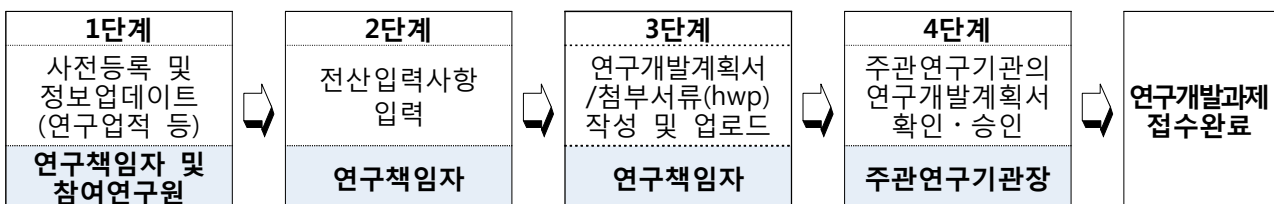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- 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- 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**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**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 - ※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
·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 ·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
 - ※ 연구자(연구기관)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 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재공고안내서 참조

□ 제출서류 및 기한

○ 제출서류
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접수
 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
-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(인)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**제본된 「연구계획서」 10부**
- 연구책임자의 성과실적 등 지원 자격을 증빙하는 **첨부서류** 등

○ 제출기한

전산입력 기한	연구계획서 우편제출 기한	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(또는 공문접수) 완료 기한
2019. 3. 4.(월) 17:00	2019. 3. 5.(화) 17:00	2019. 3. 5.(화) 17:00

- ※ 전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접수(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및 신청 불가)
- ※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,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불인정

○ 접수방법: 전자접수, 우편 및 방문접수

- 서류의 접수는 정신건강R&D사업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〈 주소 및 연락처 〉

주 소 :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(중곡동) 국립정신건강센터 10층
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(연구기획과) (☎04933)
 접수·평가 관련: 02-2204-0228, 0380
 F A X: 02-2204-0393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
※ 관련규정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 → 관련법규에서 확인

V. 기 타

□ 참여기업 부담금(세부과제별 산정)

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○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항목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	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	현물 부담액의 50% 이내	현물 부담액의 70% 이내	-
	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	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	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	-

※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% 이상으로 함

※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
○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미만)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
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
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

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)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○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’을 작성·첨부하여 ‘과제평가단’의 심의를 받아야 함
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 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사업단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 - ※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」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함
 - ※ 기술료 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용

※ 자세한 내용은 재공고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- 홈페이지
 - (소관부처)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 - (전문기관)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.htdream.kr
 - (사업단) 정신건강R&D사업단 www.mhrnd.re.kr

〈 주소 및 연락처 〉

주 소 :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(중곡동) 국립정신건강센터 10층
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(연구기획과) (☎04933)
 접수·평가 관련: 02-2204-0228, 0380
 F A X: 02-2204-0393